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기업 정책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5명(6급 1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의 직급을 2026년 6월 8일까지 상향 조정(5급 1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하고, 종전의 중소기업부령 제33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상향 조정한 직급(5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20일에서 2025년 7월 2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0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1항제6호, 제12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2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제15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가공·분석·유통·활용에 관한 사항

제9조제22항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지역 연고·전통자원의 개발 및 지역 연고·전통기업 육성정책의 수립·추진

제9조제23항제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종전의 제16호) 중 “창업 및”을 “창업기업의”로 한다.

2.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지역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운영

제13조제3항제13호 중 “옴부즈만 위원회”를 “규제개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협업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21호 중 “사업수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을 “등록 및 변경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제23호부터 제4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제5호, 제15호, 제16호, 제21호, 제22호 및 제1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확

인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

4.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의 접수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5.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15. 지역창업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16.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등록,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지도, 감독 및 운영상황 보고 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4의2. 창업기업확인서의 발급

제13조제6항제12호의2,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3호,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납품대금 연동 관련 분쟁조정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별표 4 중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75”를 “183”으로 하고,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40”을 “134”로 하며,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7”을 “26”으로 하고, 행정서기·세무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7”을 “16”으로 하며, 운전서기 또는 별정직 비서(8급 상당) 1 다음에 “운전서기 1”를 신설하고, 운전서기보 “3”

을 “2”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7”을 “70”으로 하고,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54”를 “151”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4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항 중 “2023년 7월 20일”을 “2025년 7월 20일”로, “2023년 7월 21일”을 “2025년 7월 2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3년 7월 20일”을 “2025년 7월 20일”로, “2023년 7월 21일”을 “2025년 7월 2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12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

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8명,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2명,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1명, 운전서기 1명)은 2026년 6월 8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8명,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명, 행정서기·세무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3명은 2026년 6월 8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3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 ⑱ (생략) <20> 지역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지역중소기업정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6.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 10. (생략) 11. 지역 연고·전통자원의 개발 및 지역 연고·전통기업 육성정책의 수립·추진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 ⑱ (현행과 같음) ----- -----. 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 ----- 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 ----- 3. ~ 5. (현행과 같음)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 ----- -- 7. ~ 10. (현행과 같음) <삭제>

12. · 13. (생략)

14.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5. ~ 18. (생략)

<21> 제조혁신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신설>

<신설>

1. ~ 5. (생략)

6.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지역별 협의체의 구성·운영
지원 및 지역 확산에 관한 사
항

7. ~ 11. (생략)

<신설>

12. 초고속 통신망 기반 중소기
업 스마트공장의 보급·확산
및 공급기술 보급사업 연계에
관한 사항

13. ~ 16. (생략)

12. · 13. (현행과 같음)

<삭제>

15. ~ 18. (현행과 같음)

-----.

1.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정
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정책
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 7. (현행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삭제>

9. ~ 13. (현행 제7호부터 제11
호까지와 같음)

15.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문인
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삭제>

16. ~ 19. (현행 제13호부터 제
16호까지와 같음)

<신 설>

17. (생 략)

18. 중소기업 공정혁신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의 생산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에 관한 사항

20. (생 략)

<22> 기업구조개선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 략)

21. 지역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운영

<신 설>

<23> 입지환경개선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신 설>

2. · 3. (생 략)

20.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가공
· 분석 · 유통 · 활용에 관한
사항

21. (현행 제17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24. (현행 제20호와 같음)

-----.

1. ~ 20. (현행과 같음)

<삭 제>

22. 지역 연고 · 전통자원의 개
발 및 지역 연고 · 전통기업
육성정책의 수립 · 추진

-----.

1. (현행과 같음)

2.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관
리 · 감독에 관한 사항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4. ~ 15. (생 략)

16.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17. · 18. (생 략)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

② (생 략)

③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13. 지역 내 중소기업 읍부즈만 위원회 개최 및 자문위원 관리

14. 지역 내 중소기업 읍부즈만 공청회 개최

15. ~ 19. (생 략)

20. 산업기술단지 사업수행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5. 지역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운영

6. ~ 17. (현행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18. 창업기업의 -----
--

19. · 20. (현행 제17호 및 제18호와 같음)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규제개선 위원회 -----
--

<삭 제>

15. ~ 19. (현행과 같음)

20.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협업사업 기획 및

21. 산업기술단지 <u>사업수행자의</u>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22. (생 략) ④ (생 략) ⑤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의 창업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 기업청의 지역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 업벤처과장은 광주광역시 및 전 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 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29호 부터 제34호까지의 시험·분석 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1. <u>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u> <u>자실적의 확인에 관한 사항</u> 2.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 합의 <u>등록</u>에 관한 사항 3. <u>창업기획자의 등록·변경에</u> <u>관한 사항</u>	<u>운영에 관한 사항</u> 21. ----- <u>사업시행자</u>---- ----- 2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 ----- 1. <u>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에</u> <u>대한 투자확인서의 발급 및</u> <u>투자실적 확인 자료 제출 요</u> <u>청에 관한 사항</u> 2. ----- -- <u>등록 및 변경등록</u>----- ----- <u><삭 제></u>
--	--

<u><신 설></u>	<u>4.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u>
	<u>고의 접수 및 등록 말소에 관</u>
	<u>한 사항</u>
<u><신 설></u>	<u>5.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u>
	<u>변경등록에 관한 사항</u>
<u>4. ~ 12. (생 략)</u>	<u>6. ~ 14. (현행 제4호부터 제12</u>
	<u>호까지와 같음)</u>
<u><신 설></u>	<u>14의2. 창업기업확인서의 발급</u>
<u><신 설></u>	<u>15. 지역창업전담기관 지정에</u>
	<u>관한 사항</u>
<u><신 설></u>	<u>16.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평가</u>
	<u>운영에 관한 사항</u>
<u>13. ~ 16. (생 략)</u>	<u>17. ~ 20. (현행 제13호부터 제</u>
	<u>16호까지와 같음)</u>
<u><신 설></u>	<u>21.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등록,</u>
	<u>취소 및 변경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2.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지도,</u>
	<u>감독 및 운영상황 보고 등 관</u>
	<u>리업무에 관한 사항</u>
<u>17.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등록</u>	<u><삭 제></u>
<u>및 변경</u>	
<u>18.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지도</u>	<u><삭 제></u>
<u>및 감독</u>	
<u>19. ~ 41. (생 략)</u>	<u>23. ~ 45. (현행 제19호부터 제</u>
	<u>41호까지와 같음)</u>
<u>⑥ 소상공인과장은 다음 각 호</u>	<u>⑥ -----</u>

신 · 구정원대비표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	· · <u>175</u> ·	· · <u>183</u> ·	+8
행정주사 · 세무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 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140</u>	<u>134</u>	-6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통계 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또는 공업연구사	<u>27</u>	<u>26</u>	-1

행정서기 · 세무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7</u>	<u>16</u>	-1
·	·	·	
·	·	·	
<u>운전서기</u>	<u><신 설></u>	<u>1</u>	+1
운전서기보	<u>3</u>	<u>2</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 • <u>67</u>	• • <u>70</u>	+3
행정주사 · 세무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 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 • <u>154</u>	• • <u>151</u>	-3
• •	• •	• •	